

『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(수시-3차)』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구미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을 위해 매입한 공장용지를 외국인투자 기업에 임대함으로써 산업 선진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 하고
- 도레이사의 5공단 신규투자에 따른 부지 임대 지원으로 전후방 산업 및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고 대규모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
3. 주요내용

【부지매입】

- 사업내용 :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매입 53.9천m²
- 위 치 : 구미 하이테크밸리(5공단)내
- 사업기간 : 2014년 ~ 2018년(5년간 1단계)
- 기준가격 : 14,000백만원(사업비 기준)
※총사업비 70,100백만원 (국비42,100 도비14,000 시비14,000)
- 입주기업 : 도레이첨단소재(주) ※ 11. 6. 28 MOU체결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, 동법 시행령 제7조
-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제12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계획안은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과 「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」 등 관련 법규에 의거 구미 하이테크밸리(5공단)내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서

○ 검토결과

▪ 본 계획안은

- 「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(국유·공유 재산의 임대 및 매각)」 및 「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4조」에 따라 현금 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외국인투자기업에 50년의 범위 내에서 임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」,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」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 구미 5공단 하이테크밸리내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부지 매입 후 임대함으로써 신 성장산업을 육성하고 대규모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됨.